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 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부 정원에 사회복지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두되”를 “두며”로, “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제8조의2제2항 중 “두되, 예우정책과장 및 공훈발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국립묘지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두며, 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훈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공훈발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 편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단서 중 “7명”을 “6명”으로,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을 “3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

술서기관 19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사서서기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9”를 “21”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3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5”를 “14”로 하고, “사서서기보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9”를 “21”로,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10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2”를 “12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22”를 “13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5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12”를 신설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9”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1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39”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15”를 “14”로, 기계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2”를 “127”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4”를 “142”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5 다음에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1”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1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2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22”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15”를 “14”로, 기계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16”을 “15”로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제외한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14]

국가보훈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제2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국제협력관) ① (생 략)	제4조의3(국제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u>두되</u> , 국제협력담당관은 <u>서기관</u>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u>두며</u> ----- <u>부이사관 · 서기관</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상정책국) ① ~ ④ (생 략)	제7조(보상정책국) ① ~ ④ (현행 과 같음)
⑤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u> <u>거지원 정책의 총괄 · 조정</u>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생 략)	제8조의2(보훈예우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예우국에 예우정책과 · 국립묘지정책과 · 공훈관리과 및 공훈발굴과를 <u>두되</u> , 예우정책과장 및 공훈발굴과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국립묘지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또는 <u>기술</u>	② ----- ----- ----- <u>두며</u> , 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공훈관리과장은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u>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⑤ 공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⑥ (생략)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7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③ (생략)

학예연구관으로, 공훈발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2. (현행과 같음)

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 편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6명 -----
----- 3 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한시정원) ① (생략) <u>②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1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처에 둔다.</u>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생략) <u>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u>	제24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총리령 제15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0</u>	<u>19</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u>			
<u>학예연구관</u>	<u><신 설></u>	<u>1</u>	+1
·	·	·	
·	·	·	
<u>사서서기보</u>	<u>1</u>	<u><삭 제></u>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u>19</u>	<u>21</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별표 3의2]

국가보훈처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0</u>	<u>19</u>	-1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u>			
<u>예연구관</u>	<u><신 설></u>	<u>1</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	<u>15</u>	<u>14</u>	-1
<u>사서서기보</u>	<u>1</u>	<u><삭 제></u>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			
기보	<u>19</u>	<u>21</u>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5</u>	<u>4</u>	-1
·	·	·	

[별표 10]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u>122</u>	<u>127</u>	+5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22</u>	<u>130</u>	+8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 사보	5		
<u>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u> <u>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u> <u>전산서기</u>	<신 설>	<u>212</u>	+212
<u>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u> <u>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u> <u>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신 설>	<u>229</u>	+229
<u>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u> <u>서기 또는 전산서기</u>	<u>212</u>	<삭 제>	-212
<u>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u> <u>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u>			

<u>기보</u>	<u>239</u>	<u><삭 제></u>	-239
·	·	·	
·	·	·	
방호서기보	<u>15</u>	<u>14</u>	-1
기계운영서기보	<u>2</u>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

[별표 10의2]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 ·	· · <u>122</u> ·	· · <u>127</u> ·	+5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 사보	<u>134</u>	<u>142</u>	+8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 사보	5		
<u>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u>	<u><신 설></u>	<u>221</u>	+221
<u>행정서기보·사회복지서기 보·공업서기보·시설서 기보 또는 전산서기보</u>	<u><신 설></u>	<u>212</u>	+212
<u>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 서기 또는 전산서기</u>	<u>221</u>	<u><삭 제></u>	-221
<u>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u>			

<u>기보</u>	<u>222</u>	<u><삭 제></u>	-222
•	•	•	
•	•	•	
방호서기보	<u>15</u>	<u>14</u>	-1
기계운영서기보	<u>2</u>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16</u>	<u>15</u>	-1